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2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1일

발 의 자:이정인, 정진술, 김인호,

이은주, 이승미, 김태호,

홍성룡, 노승재, 김소영,

강동길, 김소양, 박순규,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19.7.1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조례 내에 있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 방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재직	제8조(지원범위) ①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	
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u>장애등급</u> , 업무	<u>장애정도</u>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